예천군 공고 제2015 - 170호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공사(읍실,신음)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예천군『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공사(읍실, 신음)』를 추진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예 천 군 수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 안 명 :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공사(읍실,신음)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예천군 환경관리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1) 읍실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일원

· 시설용량 : Q=90㎥/일

2) 신음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가곡리, 우감리 일원

· 시설용량 : Q=100㎥/일

※ 시설용량은 실시설계 수행 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국내 하수처리공법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업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에 시설용량 50㎥/일 이상 500㎥/일 미만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 정상 가동실적(공고일 최근 1년)이 있는 고도처리 공법 보유업체로 특허권 등 처리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군과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로 한정함.

나. 신기술 또는 특허권 등 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통보없이 제외됩니다.

※ 정상가동 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 검증을 받은 경우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정상가동 실적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검증에 대하여 적용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15년 03월 17일(화) 10:00 ~ 18: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15년 03월 24일(화) 10:00 ~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3부(USB 1식) 원본1부, 사본12부

(원본 1부에만 회사명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기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바.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공문)

○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 작성지침 내용에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다. 우리군에서 기관평가(경제성분야 등) 후,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기술분야)를 하며, 최종평가는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라.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저가 공사비, 유지관리비 순위로 결정하며, 최저가 공사비도 동일할 경우 수질관리의 적정성 중 보증수질의 적정성, 부하변동의 대응성, 수질확보의 안정성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마. 금회 공고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계획시설용량의 변동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시설 완공 후 정상운전 단계에서 제안한 운영비(약품비, 전기료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공법선정 이후 선정된 공법 보유업체는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우리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 공법선정 업무는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법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기술제안업체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 및 기술제안서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타. 기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문의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 하수도담당** (☎ 054-650-6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